

한국종교법학의 현황과 전망

최종고*

머리말

- I. 한국종교법학의 전통
- II. 한국종교법학회의 창립
- III. 한국종교법학의 연구성과
- IV. 한국종교법학의 전망

맺는말

머리말

그리스도교문명의 서양에서의 교회법(canon law 혹은 ecclesiastical law, Kirchenrecht)이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다원사회인 동양에서는 종교법(religious law; Religionsrecht)이라 불리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서양의 법학이나 아카데미즘 속에서 교회법학(Kanonistik)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동양에서 — 적어도 한국에서 — 종교법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¹⁾

종교법학은 크게 나누면 종교내부법과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종교내부법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법, 불교의 사원법(寺院法), 유교의 종헌법(宗憲法)같은 내부적 질서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종교학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법학의 관점에서는 좀더 멀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다루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국가종교법(Staatskirchenrecht)에 대하여서만이다. 사실 종교법학의 진수라 할까 묘미를 접하려면 종교내부법에까

* 서울대 교수

1) 자세히는 Chongko Choi, *Staat und Religion in Korea. Zur Grundlegung eines koreanischen Religionsrechts*, Freiburg, 1979, SS. 1-19. 그리고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출판사, 1983 참조

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톨릭의 혼인법이랑 성직법(聖職法)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어찌 가톨릭시즘을 이해한다할 수 있겠으며, 불교의 계율(戒律)이나 승단법을 모르고 어찌 불교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종교도 궁극에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심원한 각 종교내부법까지 언급할 능력은 없으며, 종교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 법학자로서 국가-종교법학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 저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떤 학문은 다른 학문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그동안 법학계 안에서의 종교법학의 연구성과를 보다 넓은 종교학계에 소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고맙겠다.

I . 한국종교법학의 전통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종교법학의 연구가 시작되었는가 얼른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래에서 살펴보는대로 종교와 국가, 제도와의 관계까지 종교법학의 범위에 넣는다면 해방 전에도 간헐적으로 연구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용운의 「사법개정(寺法改正)에 관하여」(『불교』, 8권 12호, 1932) 같은 글은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교법학에 관한 출발은 역시 해방이 되고, 국가와 종교와의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처음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그에 입각하여 각 종교와 종교단체가 활발히 종교활동을 시작하면서 '법적인' 관계로 새로 출발되었다고 하겠다. 각 종교의 생리에 따라 법에 대한 태도도 달리 나타났지만, 교회법의 오랜 전통을 가진 가톨릭 진영에서 교회법학에 관한 논문들이 일찌기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법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워 성직자가 된 한공렬 주교, 나상기 신부, 정진석 주교 등과 김홍섭 판사, 이태재 교수 등의 관심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개신교에서는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이 「건국과 기독교」(1949)라는 저서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나, 법적인 관심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그 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였다. 유교와 불교도 정치적, 내부적 이유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마찰과 분규를 겪었지만 차분히 종교법을 가다듬는 성숙한 모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종교법 내지 종교법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도 관심도 별로 없었다고 하겠다.

II. 한국종교법학회의 창립

한국에서의 종교법학의 연구는 1981년 12월 4일에 한국종교법학회의 창립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모여 창립한 이 학회는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듬해 7월에 『종교법학문헌집』(한국교회사연구소출판부)을 간행하고, 이어서 『종교법판례집』(육법사, 1982. 10. 10)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3년에는 학회지 『법과 종교』 제1집을 발간하였는데,²⁾ 여기에는 교회법이 시민법에 미친 영향(이태재), 교회법과 국가법(호세 욘파르트), 고려의 국사, 왕사제도와 그 기능(허홍식), 판례를 통해 본 사찰(안종혁), 서독기본법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황우여), 한국의 복수와 형별(심희기), 비교법에 있어서 교회법의 의의(구보 마사하다), 독일에 있어서의 가톨릭시즘과 법학(알렉산더 홀러바흐), Church and State in Korea(최종고), Grundlagen und Grundzüge der Kirchenrechtslehre (한스 둠보아) 등의 논문이 실렸다. 350페이지에 이르는 본 학회지는 한국종교법학의 연구의 지평을 열어주는 본격적인 학술지였다. 본인은 본 학회를 창립하고 학회지를 창간하는 주역을 맡았기에 간단히 당시를 회고할 필요를 느낀다. 1979년에 「한국에서의 국가와 종교; 한국종교법의 기초」(Staat und Religion in Korea: Zur Grundlegung eines koreanischen Religionsrechts)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하고 귀국하여 한국에도 종교법학의 본격적 연구를 위하여 학회가 필요하다고 느껴 당시 경북대학교 민법교수로 재직중이던 원로 가톨릭 법학자 이태재교수를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창립총회를 가졌다. 마침 당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가톨릭 법사학자 구보 마사하다(久保正幡)교수, 독일의 알렉산더 홀러바흐(Alexander Hollerbach)교수, 스위스의 만프레드 레빈더(Manfred Rehbinder)교수 등이 학술발표를 하여 국제적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가지고 학자들의 회원 확보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회원들로 학회를 운영하기가 힘겨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상 활동이 휴면상태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연구자와 관심 있는 자들이 많아져 언젠가는 학회의 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2) 당시 출판이 어려운 상태에서 홍성사의 이재철 사장이 기꺼이 출간해 주었는데, 이 사장은 현재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III. 한국종교법학의 연구성과

종교법학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체계가 어떠한지, 또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한국종교법학'은 그런 면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충분히 분석되고 논의되지 않은 연구과제이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청사진이나 전망도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발표에서도 이러한 체계화나 이론화의 구상을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종교법학이라는 대체적인 구성 속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성과들이 나왔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³⁾

1. 단행본

지금까지 출간된 종교법학에 관한 연구서는 손꼽힐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아니하다. 특정분야나 방향에 따라 심도있는 연구서들이 나오기에는 아직도 학문적 축적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간된 이 방면의 단행본들은 다음과 같다.

황성수, 『교회와 국가』, 자비출간, 1972.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72(초판), 1981(중보판), 1989(증보신판).

정진석, 『교회법원사』, 분도출판사, 1975.

문화공보부, 『한국의 종교』, 문화공보부, 1972.

문화공보부, 『종교관계법령』, 1981.

황우여, 『국가와 교회』, 육법사, 1982.

한국종교법학회, 『종교법학문헌집』, 한국교회사연구소출판부, 1982.

한국종교법학회, 『종교법판례집』, 육법사, 1982.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출판사, 1983.

한국종교법학회, 『법과 종교』, 홍성사, 1983.

문화공보부종무실, 『외국의 종교제도』, 문화공보부, 1989.

법무부, 『종교규범과 국법질서』(법무자료 132집). 법무부, 1990.

한국종교사회연구소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민족문화사, 1992.

2. 종교법의 본질

서양에서는 교회법이라 불리우는 종교법의 본질에 대하여 종교법의 철학 내지

3) 종교학계에서 발표된 이 방면의 논문들에 대하여 일일이 잘 모르고 있으니 추후에라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신학(Rechtstheologie)에 관한 연구는 종교법학의 가장 근본적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⁴⁾ 독일에서 주로 발전된 법신학에 관한 연구소개가 이루어졌고, 자크 엘루(Jacques Ellul)의 『법의 신학적 기초』(*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같은 책이 번역 출간되기도 하였다.⁵⁾ 또한 유교법과 불교법에 관한 철학적, 법사상사적 연구논문들도 보인다.

- 이병린, 「불교관에 의한 법철학의 구상」, 『씨알의 소리』23~29호, 1973년 6월~12월호.
- 김병대, 「유교적 자연법론에 관한 연구」, 『법정대논문집』(조선대)2, 1974.
- 이항녕, 「법과 종교」, 『통일세계』40, 1974.
- 장경학, 「법과 종교」, 『동국법학』5, 1963.
- 에릭 볼프/최종고역,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길」, 『기독교사상』, 1975년 11월호.
- 김영철, 「기독교에서 본 법과 평화사상」, 『논문집』(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4권 2호, 1977.
- 이형국, 「칼빈의 법률관」, 『신학지남』182, 1978.
- 최종고, 「현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동향」,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이해」(김형석교수회감논집). 삼중당, 1981.
- 양준모, 「Confucianism and Law」, 『대한국제법학회논총』29권1호, 1982.
- 최종고, 「신학과 법학」, 『기독교사상』, 1986, 8.
- 심희기, 「유교법의 철학적 기초」, 『영남대 사회과학연구』7권1호, 1987.
- 장태주, 「유교의 법사상 소고」, 『법학논총』(한양대)5, 1988.
- 임정평, 「불교사상이 한국사회와 법학에 미친 영향」, 『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서돈각박사고회기념), 법문사, 1990.
- 지승원, 「법과 인간에 대한 법신학적 이해: Erik Wolf의 이론을 중심으로」, 『법철학과 사회철학』, 창간호, 1991.
- 장석권, 「유교적 법이념과 법규범의 구조적 특성」, 『한국법사학논총』(박영호교수회감기념), 박영사, 1991.
- 박금호, 「한국교회법의 법철학적 고찰」, 광주대 법학석사, 1993.
- 손 성, 「종교법의 의의」, 『불교대학원논총』(동국대)2, 1994.

4) 법신학(Rechtstheologie)이란 용어는 가톨릭의 자연법론에 대립해 만든 개신교적 개념인데,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7(년판), pp.379~409.

5) 한상범·장인석 공역, 『법의 신학적 기초』, 현대사상사, 1985.

- 신치재, 「법신학의 전개와 과제」, 『기독교문화연구』(한남대)1, 1994.
- 지교현, 「조선조 유가의 법사상」, 『정신문화연구』41, 1990, 12.
-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법과 종교」, 『법학』(서울대) 36권1호, 1995.

3. 국가와 종교

종교법은 종교내부법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연구 영역이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는 한편으로 다분히 역사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방면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는데, 한국에서의 국가와 종교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도 보인다.

- 이태재, 「교회와 국가」, 『대화』2, 1964.
- 안병무, 「국가와 종교의 관계」, 『사목』26, 1964.
- 임석재, 「종교의 설립에 관한 각국의 헌법상의 비교조항」, 『국회보』44, 1965.
- 남홍우, 「종교의 설립에 관한 미국헌법 수정제1항의 금지조항에 관한 위배여부」, 『법조춘추』56, 1968.
- 최종고, "Recht und Relig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 1979.
- 최종고, "Staat und Religion in der Republik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50, 1979.
- 최종고, 「교회와 국가」, 『기독교대백과사전』2, 교문사, 1980.
- 최종고, "Church and State in Korea: A Historical and Legal Approach", *Korea Journal.*, vol. 21, No. 12, 1981.
- 황우여, 「독일의 국가와 종교」, 『현대공법의 이론』(김도창박사회갑기념), 1982.
- 김 철, 「미국헌법상의 국가와의 관계」, 『숙대논문집』12, 1983.
- 양 건, 「현대국가와 종교」, 『신동아』1983년 4월호.
- 최종고, 「한국에서의 국가와 종교: 종교법사적 고찰」, 『사상과 정책』1권3호, 1984.
- 한상범, 「한국의 종교와 법률문제」, 『판례월보』25, 1987.
- 최종고, 「정교분리원칙의 한국적 의미」, 『현대사회』25, 1987.
- 이태연,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부산외대)창간호, 1989.

- 김종서, 「현대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권 1호, 1992.
- 지규철, 「미국에서의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석사, 1993.
- 권영철, 「미국헌법상 종교의 개념과 그 법리의 전개」, 『미국헌법연구』, 5, 1994.
- 강경선, 「국가권력과 종교」, 『공법연구』, 22권 2호, 1994.
- 최종고,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법학』(서울대) 37권 2호, 1996.
- 최종고, 「한국에서의 유교와 법」, 『법제연구』, 12, 1997
- 최종고, 「현대한국의 종교와 국가」, 『교회와 국가』(오경환신부회갑기념), 인천카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4. 종교의 자유

종교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는 종교의 자유(Religiousfreiheit)에 관하여는 주로 헌법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논문들이 대종을 이룬다.

- 장순용, 「사기(詐欺)와 종교적 자유에 관한 논의」, 『법조』, 9권 2호, 1960.
- 김철수, 「종교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 『고시계』, 1963년 6월호.
- 문홍주, 「종교의 자유: 미국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연구」, 『법정』, 1964년 12월호.
- 송상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치료거부와 관련된 법적 제문제」, 『법학』(서울대) 13권 2호, 1972.
- 최대권, 「종교상의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행위(판례평석)」, 『판례회고』, 5, 6권, 1977.
- 계창업, 「종교의 자유의 재조명」, 『법정대학보』(인하대) 1, 1972.
- 정덕장, 「종교의 자유」, 서울대 법학석사, 1972.
- 김철수, 「종교의 자유」, 『고시계』, 1983년 9월호.
- 양 건, 「정교분리의 원칙」, 『고시계』, 1983년 9월호.
- 황환교, 「종교적 자유권에 관한 연구: 서독 기본법 제4조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전국대 법학박사, 1986.
- 송기춘,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관한 고찰」, 서울대 법학석사 1986.
- 이준구, 「종교의 자유」, 『고시연구』, 13권 10호, 1986, 10.
- 양 건,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고시계』, 1987년 3월호.

- 구병진, 「종교자유와 인권」, 『가톨릭사상』(대구가톨릭대)2, 1988.
- 김은집,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의 관계」, 『형평과 정의』3, 1988.
- 이승진,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 관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법학석사, 1989.
- 홍정수, 「종교의 자유: 그 신학적 반성: 법·인권·기독교」, 『기독교사상』, 1990년 7월호.
- 김영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II, 1991.
- 김영수,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그 한계」,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구병식박사 정년기념), 박영사, 1991.
- 이만희, 「중국에서의 종교의 자유」, 『법조』, 1993년 8월호.
- 이영진,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위반」, 『고시계』, 1993년 11, 12월호.
- 임춘원, 「종교의 자유와 종교입법의 과제: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을 중심으로」, 『국회보』332, 1994.
- 이덕연, 「교회비호권의 헌법적 조명」, 『인권과 정의』, 1995년 8월호.

5. 종교정책과 입법

한 나라의 종교법은 궁극적으로 종교정책과 그에 따른 입법방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국에서의 종교정책과 종교입법에 관한 연구와 함께 한국에서의 종교정책 및 종교입법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박사 유교 담화집』, 유도회총본부, 1958.
- 김하섭, 「국내 사이비 종교단체의 등록」, 『입법조사월보』2, 1965.
- 박형규, 「신교(信敎)의 자유는 어디로: 사회단체등록법 개정안이 의미하는 것」, 『사상계』, 1966년 1월호.
- 고광덕, 「한국 불교의 교단제도」, 『종교와 윤리』, 1977년 6월.
- 탁명환, 『한국의 종교정책연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0.
- 김상호, 「한국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현행법제 및 제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1987.
- 연기영, 「세계의 종교법인법과 한국에서의 제정 가능성」, 『현대사회』25, 1987.
- 탁명환, 「바람직한 종교정책의 소고」, 『현대종교』166, 1988, 2.
- 연기영, 「종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법과 사회』2, 1990.

- 한상범, 「명치헌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에 대한 규제: 치안유지법에 의한 종교 규제의 배경과 그 유산」, 『공법의 제문제』(한창규박사학회갑기념), 1993.
- 박귀환, 「한국정교관계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법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신학석사, 1993.
- 손 성,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 종교법인법을 중심으로」, 『불교대학원논총』(동국 대) 1, 1993.
- 김일수, 「한국형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제재문제」, 『사회과학연구』(서강대)3, 1994.
- 최종고, 「나쁜 사마리아인법」, 『시민과 변호사』13, 1995년 2월호.
- 김 넝, 「종교의 정치적 개입, 제약요인들의 한계: 한국천주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서강대)4, 1995.
- 윤이홍,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고려한림원, 1997.

6. 종교와 재산

좁은 의미에서 종교법에 관한 법학적 연구는 어쩌면 종교재산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회나 사찰 혹은 향교의 재산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함께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법이론과 함께 다수의 분석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 김중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 『법학』(서울대)1권 1호, 1959.
- 장경학, 「사찰 임야 이중매매와 효력」, 『법률신문』, 1972년 9월 25일.
- 장경학, 「불교재산의 귀속관계」, 『고시계』, 1976년 4월호.
- 이덕승, 「교회재산의 법적 성격」, 『상지실업전문대논문집』16, 1986.
- 조용연,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민사판례연구』VIII, 1986.
- 김상기, 「교회분열과 분열된 교회재산에 관한 법리」, 『법조』35권3호, 1986, 3.
- 김성만, 「교회의 분쟁과 재산의 귀속문제」, 『판례월보』191, 1986, 8.
- 오종한, 「불교재산관리법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Fides』(서울법대)27권 1호, 1987.
- 김진현,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 1988.
- 김진현,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분렬시의 재산귀속」, 『기독교사상』, 1989년 4월호.
- 오석락, 「교회가 분렬된 경우의 법률관계(판례평석)」,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2, 1989.

이홍권, 「사찰의 재산귀속관계 및 신도회의 종단탈퇴의 효력」, 『법조』423, 1991년 12월호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사법행정』, 1992년 10, 11월호

홍광식, 「사찰과 신도회의 재산귀속」, 『관례연구』IV, 1993.

이덕승, 「교회의 분열시 그 재산의 귀속관계」, 『사회과학논총』(안동대)5, 1993.

임춘원,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회』1994년 8월호

7. 종교와 재판

종교문제가 극단화되어 세속적 재판의 대상이 될 때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종교관계 판례가 적지않게 축적되고 있다. 위에서 본대로 한국종교법학회에서 『종교법판례집』(1983)을 출간하였고, 대한조계종총무원에서 『한국불교판례집』(1996)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최종고, 「한국종교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기독교사상』, 1982년 7월호

황우여, 「국가의 법과 교회의 재판」, 『사법논총』13, 1982.

최종고, 「한국의 종교관계와 종교입법」, 『판례월보』153, 1983.

안종혁, 「판례를 통해 본 사찰」, 『법과 종교』(한국종교법학회), 1983.

이찬우, 「교회법적 해결이 불가능한 혼인에 관한 내적 법정과정에서의 해결」, 『신학과사상』(카톨릭대)2, 1989, 12.

최춘근, 「사찰과 특정종단과의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6, 1991.

김용진, 「대한감리회 교단에서 출교된자와 교단에서 탈퇴한 자들의 지위」, 『사법행정』382, 1992년 10월호

송상석, 「법정소송과 종교재판」, 1996.

8. 종교와 교육법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교육의 문제는 각국에서 특별한 관심 영역을 이룬다. 교육에서 얼마나 종교적 자유와 색채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특히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교육정책과 함께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제한에 따른 문제로 제기되었다.

- 이병용, 「종교의 설립: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행위한계」, 『법조춘추』51, 1968.
- 오인탁, 「종교교육과 국가」, 『기독교사상』, 1982년 3월호.
- 한승현, 「외국의 종교교육과 국가」, 『기독교사상』, 1982년 3월호.
- 이상돈, 「미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 종교와 교육」, 『법정논총』(중앙대)38, 1984.
- 박병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교육」, 『목회』, 1995년 5월호.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고시계』, 1995년 10월호.

9. 종교와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와 유교에 관련된 것들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의 특별한 보호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종교의 지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간섭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근년에는 정부의 개발정책과 종교계의 문화재보호, 환경보호가 마찰을 일으켜 불국사, 해인사 등에서 분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 오세탁, 「한국문화재보호제도연구(I)」, 『현대법의 과제』(전창조박사고회기념), 1987.
- 최종고,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비교법 및 국제법적 고찰」, 『문화재』23, 1990.
- 김경태, 「역사환경보존을 위한 법제도연구」, 『논문집』(경주대)4, 1993.

10. 종교법사

이상에서 종교법학의 주요한 몇 분야를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예컨대 국가의 식과 상징, 공휴일과 종교, 군목·병목·교도소 선교, 종교와 조세, 선거와 종교, 종교와 사회복지, 인권과 종교, 종교와 언론, 종교와 재정, 종교와 건축, 종교와 노동, 종교와 형법, 종교와 가족법, 국가와 종교연합 등의 분야에 관하여 종교법학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방면에 관한 연구는 별로 나온 것이 없는 듯 보인다.⁶⁾

위와 같은 현재의 종교법학적 과제들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고찰해보면 모두 종교법사(宗教法史)에 해당한다. 학계의 연구총이 두터울수록 실용적 연구보다 역사

6) 자세히는 최종고, 「현대 한국의 종교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가톨릭대출판부, 1977.

적 연구가 많이 나오는 범인데, 우리의 경우는 엄격한 의미의 종교법사 연구는 희박하고 역사학자들의 이와 비슷한 연구 논문들이 있을 뿐이다.

- 최석우,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역사연구』 21, 1969, 209~229.
 허홍식, 「고려시대의 국사·왕사제도와 그 기능」, 『역사학보』 67, 1975/9.
 강위조, 『일본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기독교서회, 1977.
 레드야드/손태원역, 『유교이념과 국가안보: 임진왜란시 조선왕조의 존망의기와 관련하여』, 외교안보연구원, 1978.
 최종고, 「한국에 있어서 종교자유의 법적 보장과정」, 『교회사연구』 제3집, 1981.

IV. 한국종교법학의 전망

위에서 미약하나마 차츰 중요성이 인식되어가고 있는 한국에서의 종교법학의 연구사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한국의 종교상황과 종교학의 연구상황, 법학의 연구상황, 그리고 정부적 상황을 다소 분석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한국의 종교상황

종교법의 관점에서 한국의 종교상황을 보면, 좀 극단적 표현을 쓴다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종교들은 서로 교세확장에 열심 일 뿐, 자신의 종단이나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위해 법이나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된'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다분히 '운동'지향적이지 '질서'지향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30%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개신교의 분위기가 그러한 것은, 원래 개신교가 교회법보다는 교회정치를 강조하는 '반(反)법률적' 성향 이상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교회정치 위에서 교회법(evangelisches Kirchenrecht)이 나름대로 잘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의 권위가 수립되지 못한 채 개신교회의 성장에 급급하다 보니 교회법을 논할 분위기가 못된다. 아마도 종교법인법의 제정에 대하여 가장 강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도 한국 개신교가 아닌가 싶다(물론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한 한국개신교는 지리멸렬하다시피 분열양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질서

와 원칙, 법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왔다고 하겠다. 에큐메니칼 운동도 자교단 이기주의 앞에서는 효력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된 지금부터는 '선교'에서 '성숙'과 '질서'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화주의를 표본으로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대해 그것을 요구하고 '예언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불교와 유교, 신흥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어쨌거나 민족문화의 귀중한 유산으로서 유교가 잘 전승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뜻있는 국민들에게 성균관과 유림(儒林)에서 들려오는 잡음과 난맥상은 유교 종교법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지금도 계속되는 린치집단을 연상케 하는 불교계의 분규는 사찰법이 존재하는가마저 의문시하게끔 만들고 있다.

가톨릭은 일견 교회법을 가장 존중하고 질서있게 정립하려는 듯 보이는데, '비그리스교도적' 종교다원사회(宗教多元社會)에서 복잡한 고충도 많을 것이며, 아직도 타종교와의 관계가 국가, 사회의 관계에서 정연한 가톨릭 사회이론 내지 법이론으로 정립되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는 듯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는 한국사회가 종교의 선교적 각축장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종교와 국가,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정립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종교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종교인으로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종교학적 상황

필자는 한국 종교학의 내부상황을 자세히 모르지만, 종교학의 한 분야로 종교사회학이나 종교와 사회, 종교와 정치 등이 가르쳐질 수 있으면 종교법 내지 종교와 법 같은 분야도 종교학도 내지 신학도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의 성직자들과 종교인에게 이러한 법질서와 정의에 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종교법 내지 법과 종교에 관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법학적 상황

우리나라의 법학은 전통법에서 단절되다시피한 서양적 법학이론을 가르치는데, 그마저 사법시험에 필요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형사소송법의 이론

바 6법 외에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별 관심이 없다. 요즘은 법학 전공에 관계없이 ‘관악의 고시화(考試化)’ 바람이 불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학 교육에서 종교법을 운운하는 것은 낭만적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리기 마련이다. 필자도 강단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종교법의 연구가 연결되지 아니하여, 근년에는 사실상 종교법의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가 단순한 제도와 기술이 아니고 인간의 고도의 사상과 정신을 요하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도 종교법의 중요성은 더욱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4. 정부적 상황

우리나라의 종교법과 종교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적 기구는 문화부 혹은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안에 있는 종무담당 기구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정책이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한마디로 답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어떻게 변천해왔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해방후 대한민국 종무담당부처의 변천사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조사해 보았다.⁷⁾

1) 종교행정 기구연혁

- 1948. 11. 4 문교부 문화국 성인교육과 설치
- 1955. 2. 17 문교부 문화국 사회교육과 설치
- 1961. 10. 2 문교부 문예국 사회교육과 설치
- 1963. 12. 16 문교부 문화예술과 사회교육과 설치
- 1968. 7. 24 문화공보부 문화국 문화과 설치
- 1970. 12. 18 문화공보부 문화국 종무과 설치
- 1974. 7. 10 문화공보부 문화국 종무과, 종무담당관 1인(3급), 종무담당 2인(4급)

* 종무담당관 및 종무담당 신설

- 1979. 4. 13 문화공보부 종무국 종무1과, 종무2과, 종무담당관 1인(3급), 종무담당 2인(4급) * 종무과 신설

7) 아래 자료는 필자가 1997년에 미국에 가면서 필요할 것 같아 당시 문화공보부에 문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만큼의 자료도 보기 쉽지 아니하여 여기에 적어두는 것이다.

1981. 11. 2 문화공보부 종무국 종무1과, 종무2과, 종무관 1인(3급), 종무담당 2인(4급)
1982. 12. 31 문화공보부 종무실 종무행정과, 종무지원과, 기획관 1인(2급), 종무관 3인(2-3급), 종무담당 2인(4급) * 종무국을 종무실로 확대 개편
1985. 10. 19 문화공보부 종무실 종무행정과, 종무지원과, 기획관 1인(2급), 종무관 3인(2-3급), 종무담당 2인(4급)
1990. 1. 3 문화부 종무실 종무1과, 종무2과, 종무지원담당관 1인(4급), 종무관 3인(2-3급), 종무담당 1인(4급)
1990. 11. 14 문화부 종무실 종무1과, 종무2과, 종무지원담당관 1인(4급), 종무관 3인(2-3급)
1993. 8. 6 문화체육부 종무실
1994. 5. 4 문화체육부 종무실 종무1과, 종무2과, 종무지원담당관 1인(4급), 종무관 2인(2-3급) * 종무관 1인(3급) 축소 개편
1996. 7. 1 문화체육부 종무실 종무총괄과, 종무1과, 종무2과, 종무관 2인(2-3급)

2) 기구현황

현재는 중앙에서는 문화관광부 안에 종무실장(1급)이 있고, 종무관(2,3급)이 불교·민족종교담당관과 개신교·천주교담당관으로 2명 있고, 그 아래 종무총괄과(정책, 조정, 교류), 종무1과(불교·기타), 종무2과(개신교·천주교)가 있다. 지방차원에서는 광역단체에는 문화관광과 문화계에서 종무업무를 겸장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문화공보실 문화계에서 종무업무를 겸장하고 있다.

3) 주요기능

종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북한 및 공산권과의 종교교류 지원

해외국제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기타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지원

- 종교간 갈등 해소 및 화합 지원
- 종교계의 건전활동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정부와 종교계간 협력분위기 조성

4) 주요활동 내용

- 종교자유의 보장
 - 정부정책 입안, 시행시 자문·검토·건의를 통한 종교자유의 침해 방지
 - 종교목적 재산 보호
- 종교단체의 건전활동 지원
 - 사회봉사, 의료, 교육, 학술, 복지 등 종교단체의 건전활동 지원(예산 및 행정 지원, 포상, 격려, 홍보 등)
 -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활동 억제(종교신문고 운영, 실태조사, 기타 감사, 행정 제재, 언론공개 등)
 - 종교간의 갈등해소 및 화합 유도
- 종교연합단체 및 행사 지원
 - 학술, 문화 등 종교연합행사 개최
 - 합동간담회 개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자료(종교의식 및 예절집, 종교환황 자료집 등) 발간
- 남북 및 국제종교교류 활동 지원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국제종교교류 활동 지원
 -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종교교류 활동 지원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종교시설의 보호
- 정부와 종교계간 상호이해의 증진
- 정책설명회, 건의 및 요구사항 전달, 조정 및 중재 등

이상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종교업무는 전체적으로 종교행정에 가깝지 종교법의 차원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종무행정은 법보다는 종교간의 대화, 종교와 국가와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윤활유 내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염두해 두고 온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종교법, 종

교정책, 종교행정의 대강이랄까 방향이 좀더 분명히 느껴졌으면 싶다.

물론 여기에는 종교법인법 같은 모든 종교에 일사불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일본과도 같은 종교법인법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와 모색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 종교, 종파간의 이해관계와 의견대립 때문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법은 때를 지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종교에 관하여 법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국적인 ‘종교적 현존’에 맞는 질서와 법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한국종교 법학의 지속적인 과제일 것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대충 한국종교법학의 연구현황을 검토하고 대체적인 진단을 해 보았다. 이미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의 종교적 전통은 깊지만, 근대적 의미의 법학의 일환으로서의 종교법학의 연구는 아직 역사도 미천하고 연구인력도 많지 아니하다. 종교의 힘은 막강해가지만 그것이 주로 자기 교세의 확장으로 구사되어, 질서와 원칙,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성숙한 자세에로의 응집력은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교법학의 발전은 당장 크게 기대할 수도 없고, 다소 안타까운 눈으로 한국의 종교학과 법학이 가야 할 먼 노정에서의 간헐적 해후를 기대해 볼 뿐이다. 우리나라의 종교법학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종교와 법, 종교학과 법학이 모두 질적 수준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정착되어야 비로소 샘물이 고이듯 자연스럽게 발전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